

대구지방법원 2022. 11. 9 선고 2021나2231 판결 [부당이득금 반환]

전 문

원고, 피항소인 A

피고, 항소인 B

변 론 종 결 2022. 9. 7.

판 결 선 고 2022. 11. 9.

제1 심판결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1. 9. 1. 선고 2021가소5223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및 항 소 취 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남편 C와 함께 'D'라는 상호의 자동차 튜닝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가 2021. 3. 10. C에게 자동차 튜닝 작업을 의뢰하자, 당시 C는 '인치업 300, 타이어 280, 구변1) 100, 견인장치 140, 자전거 케리어 502), 윈치3) 250 베드4) 별도 작업비 별도, 락슬 55'로 기재되어 있는 메모(갑 제2호증, 별지 참조)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원고는 같은 날 피고의 계좌로 락슬 부분을 제외한 1,210만 원(공급가액 1,100만 원 + 부가가치세 110만 원)을 송금하였다.

다. C는 인치업 부품(메탈클락 게임체인저 킷)이 배송된 2021. 3. 30.부터 튜닝 작업을 개시하였지만 원고가 요구한 2021. 4. 6.까지 작업을 완료하지 못했다.

이에 원고는 약정한 튜닝 작업 중 '타이어(280만 원), 구조변경(100만 원), 윈치(250만 원)' 부분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2021. 4. 15. 이 사건 소장을 통해 피고에게 미이행 부분에 해당하는 630만 원의 환불을 요청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 제기 후인 2021. 4. 19. 원고에게 405만 원만 반환하였다.[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1, 3, 제2호증, 제3호증의 1, 2, 을 제2호증의 2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쌍방의 주장 및 쟁점

가. 쌍방 주장의 요지

(1) 원고

C가 당초 원고와 약정한 튜닝 작업 중 '타이어(280만 원), 구조변경(100만 원), 윈치(250만 원)' 부분 합계 630만 원을 이행하지 않았고, 윈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작업에는 작업 공임이 별도로 책정되어 있지 않았다.

그럼에도 피고는 405만 원만 환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나머지 부당이득금 225만 원(= 630만 원 - 405만 원)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

메모에는 원고가 요청한 튜닝에 필요한 부품 구입비용만 기재했을 뿐이고 작업 공임은 나중에 따로 계산하기로 하였는데, C가 작업한 부분의 부품 구입비용과 공임이 280만 원(= 인치업 공임 150만 원 + 원치 베드 부품 및 설치 공임 합계 85만 원 + 핸들쇼바 부품 및 설치 공임 45만 원)이 된다.

피고는 원고가 환불을 요구한 630만 원과 락슬 대금 55만 원을 더한 685만 원에서 C가 작업을 마친 부분의 부품 구입비용과 설치 공임 280만 원을 뺀 405만 원을 원고에게 모두 반환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

3. 판단

이 사건의 쟁점은 쌍방 사이에 메모에 기재된 금액 외에 작업 공임을 별도로 계산하기로 약정되어 있는지 여부이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제3 내지 13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C는 원고 차량의 튜닝 작업을 위해 메탈클락 게임체인저킷을 300만 원에, 팔콘 3.3 속업소버(JT)를 235만 원에, 폭스 핸들샷(JT)을 38만 원에 구입하였고, 2021. 3. 30.부터 원고 차량 앞부분의 인치업 작업을 하고 앞 범퍼 부분에 원치베드를 설치하다가 원고가 다른 업체에 머플러 변경 작업을 맡기는 바람에 인치업 작업을 중단한 사실, 메모에 기재된 인치업과 타이어 부분의 금액을 보면 C가 구입한 부품의 대금과 일치하거나 거의 비슷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자동차 튜닝 작업은 차량의 성능을 향상시키거나 원래 없던 용도나 기능을 추가시키는 것이어서 전문적이고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고 작업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므로, 튜닝 대금에 작업 공임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한 점, 메모에 기재된 ‘베드 별도, 작업비 별도’는 원치 장착을 위해 베드가 필요할 경우 베드 구입비용과 설치 공임을 추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합리적인 점 등의 사정을 보태어 보면, C가 수행한 인치업 등의 작업에 대한 공임 280만 원은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므로, 위 280만 원을 부당이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약정한 튜닝 대금에는 원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의 공임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형태, 판사 박치봉, 판사 서영애

	연임	300	
	취임	200	
	구비	100	
	전임	140	
	취임	60	870
	기 외	200	비드밴드 30대 밴드
	후송	55	
	별		

- 1) 구조변경을 의미함
- 2) '자전거 케리어 50' 옆에 기재된 870은 위 5개 항목의 합계로 보임
- 3) 차량을 움직이거나 끌어올리는데 쓰는 차량 구난 장비
- 4) 원치를 받쳐서 차량 앞 범퍼에 고정시키는 부품